

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결과 보고

용강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국유재산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단점유를 근거로 우리시에 변상금을부과함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.

I 소송 결과

□ 소송결과

사건	3심결과	2심결과	1심결과
◦ 사건명: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◦ 원고: 서울특별시 ◦ 피고: 한국자산관리공사	◦ 사건: 2011두25630 (대법원) ◦ 결과('12. 3. 15) ⇒ 우리시 패소	◦ 사건: 2011두17013 (서울고등법원) ◦ 결과('11. 9. 21) ⇒ 우리시 패소	◦ 사건: 2010구단18584 (서울행정법원) ◦ 결과('11. 4. 26) ⇒ 우리시 승소

□ 소송경위

- 변상금 부과('10. 6. 11)
 - 대상(국공유지) : 마포구 용강동 496-7 외 15필지 1,812 m^2
 - 금 액 : 157,906,560원
 - 점유기간 : '08. 8. 14 ~ '10. 4. 19
-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: '10. 9. 1

II 판결 요지

● 3심 판결요지

- 상고를 기각한다. ◦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- 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은 변상금 징수의 예외사유(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2호)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-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까지 변상금 징수의 예외사유인 수재, 화재 등의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,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-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.
-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을 승계하였으므로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심 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- ③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변상금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- 원고가 그 이전에 총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·처분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08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.

Ⅲ | 향후계획

●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

1. 변상금부과액(157,906,560원) 지급

⇒ 최종 지급할 변상금을 확인하고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예비비사용 방침(주택정책실장) 받아 집행

2. 소송비용

⇒ 소송확정 증명원과 상대방 청구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법무당당관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